

지역간 연계·협력사업들을 통한 상생발전 을 위한 정책

(한

I. 지역간 연계·협력의 확대 필요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광역
강화전략”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기제는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계획권역은
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협력이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에 기초한 협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
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

을 통하여 중복투자
n cost)을 절감하고 공
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
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
의 경제(economies of sca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 계획이 많아 발굴진수에 비례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놓고 있으나 계획수립 단계에 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나 권역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과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응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기획하기 보다는 단독사업을 당해 사업목적에 구속받아 다(조제2항)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이 부족하고, 광역위원회와 시

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협력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사회적·인문적·환경적 면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촉진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부여, 합의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협력절차의 진행 등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에는 법률의 목적, 협력사업의 유형, 지원대상 분야, 협력계획의 수립, 협의절차, 재원지원, 추진체계, 지역 간 협약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협력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부여, 합의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협력절차의 진행 등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부여, 합의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협력절차의 진행 등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